

Edwards 장비 반송 절차

지침

장비를 반송하기 전에 사용하던 장비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Edwards에 반드시 경고 통지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장비를 서비스하는 절차를 결정한다. **반송 전에 반송 신고서(HS2)를 작성하여 Edwards에 보내야 한다.** 이 신고서는 Edwards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며 국가 간 운송 안전 규칙 또는 환경에 관한 규제 사항과는 무관하다. 선적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내문

- 장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했던 물질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그 장비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UN 세계 조화 시스템(GHS),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EU 규정 1272/2008(CLP) 또는 미국 직업 안전 및 보건 규정(29CFR1910.1200, Hazard Communication)에 따라 위험하다고 분류된 물질과 함께 사용된 경우 장비는 '오염된 상태'에 있다.
- 장비에 방사능 물질, 생물체 또는 감염체, 수은, 폴리 염화 비페닐(PCB), 다이옥신 또는 소듐아지드를 사용했을 경우 반송 전에 반드시 제독해야 한다. 반송 신고서(HS2)와 함께 반드시 별도의 오염제거처리 증명서(예: 처리 분석 결과 보고서)를 Edwards로 보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Edwards에 연락한다.
- 만일 장비가 오염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오염된 모든 잔여물을 제거한다(위험 물질 운송을 통제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 또한 위험 요소, 검인 상태, 적하 목록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위험 물질 선적을 통제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비를 선적한다.

주의: 일부 오염된 장비는 항공 화물편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음.

절차

1. Edwards에 연락하여 장비 반송 승인 번호를* 취득한다.
2. 반송신고서(HS2)를 작성한다.
3. 장비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위험 요소, 검인 상태, 적하 목록을 분류하고 오염 물질의 선적을 통제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비를 선적한다. 선적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의: 반도체 같은 일부 위험 물질이 있는 오염된 장비는 항공 화물편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운송업체에 문의한다.**
4. 위험 가스의 모든 잔여물을 다음과 같이 모두 제거한다. Edwards로 반송될 장비 및 부속품의 비활성 기체를 통화시키고 가능하면 장비 및 부품 내의 모든 유체(fluid) 및 윤활유를 배출한다.
5. 오염되지 않은 장비의 모든 유입, 유출 부분(부속품이 결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을 마개나 PVC 테이프로 봉한다.
6. 오염된 제품은 두꺼운 폴리에틸렌 방수 포장백으로 봉한다.
7. 만일 반송 장비가 크면, 장비 및 그 부품들을 나무 팔레트에 묶는다. 만일 장비가 팔레트에 묶기엔 너무 작을 경우 튼튼한 상자에 넣는다.
8. 반송 신고서(HS2) 사본을 Edwards로 팩스타 우편으로 보낸다. 신고서는 반드시 장비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9. 운송업체에 반송 신고서(HS2)의 사본을 건네 준다. 만일 장비가 오염되어 있다면 운송업체에 반드시 알려준다.
10. 신고서 원본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전천후형 장비 포장 외피에 봉투를 단단히 붙인다. **봉투 겉면과 장비 포장의 겉면에 반송 승인 번호를* 기재한다.**

* 일본은 해당 없음